

보도시점 2024. 8. 13.(화) 석간 배포 2024. 8. 12.(월) 15:00

2024년 하반기 영세·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4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

- '24년 하반기 [●]신용카드가맹점 304.6만개, ^❷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78.6만개, ^❸택시사업자 16.6만개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
 - '24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이번에 영세·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8.3만개, PG 하위가맹점 16.6만개, 개인택시사업자 5,173개는 수수료 차액 환급

'24.8.14일부터 **304.6만개**의 신용카드가맹점(전체 318.1만개 중 95.8%)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**우대수수료율**이 적용됩니다.

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'24.8.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, 여신금융협회 콜센터(☎02-2011-0700)나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」*을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* 여신금융협회 (PC·모바일 웹) www.cardsales.or.kr, (모바일 앱) 카드매출조회 (☞참고1)

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)2011-0700 롯데카드 1588-8100 비씨카드 1588-4500 삼성카드 1588-8700 신한카드 우리카드 1544-7000 1644-9797 하나카드 현대카드 1800-1111 1577-6000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1644-7400 1588-1788 씨티은행 1566-1000

【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】

2024년 상반기 중('24.1.1.~'24.6.30.)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*받다가,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.3만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을 환급('24.9.27일 이내)해드립니다.

*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

환급액은 '24.1.1.~6.30.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"기납부한 카드 수수료"와 "우대수수료율을 **적용받았을 경우 납부**하였을 카드수수료"와의 **차액**으로 계산됩니다.

- ◆ 환급액 = '24.1.1일~'24.8.13일 동안 카드매출액 × ['24년도 상반기 적용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'24년도 상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(0.5~1.5%)]
- ※ (사례) '24.1.1일 개업, 약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.4억원(연매출 환산 2.4억원) 가맹점이 2.2%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, **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*** 가능
 - * 약 7개월간 카드매출 1.4억원 * (기납부수수료율 2.2% 우대수수료율 0.5%) = 238만원

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,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·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*하실 수 있습니다. '24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8.3만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 (※ 가맹점당 약 34만원 환급)

*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4년 9월 27일부터 확인 가능

여신금융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**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**과 함께 **환급 여부도 안내**합니다. 한편, '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, 같은 기간 중 **폐업한 경우***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,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'24.9.27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(참고2)

* (예) 2024년 1월 ~ 2024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4년 6월 30일 전 폐업

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.6만개(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.4%)와,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.6만개(전체 택시사업자의 99.6%)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 각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2024년 상반기 중('24.1.1.~'24.6.30.)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,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신규 PG 하위가맹점 16.6만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5,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을 환급('24.9.27일 이내)* 해드립니다.

*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'24.9월중 확정될 예정

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*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개별 PG 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'24.9.27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.

* 신용카드가맹점과 마찬가지로, '24년 상반기에 신규 하위가맹점 등이 되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포함

한편,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('24.5.21일 시행)에 따라 이번부터는 일반(법인)택시사업자(1,300개, 전체 일반(법인)택시사업자의 76.1%)가 새롭게 영세·중소가맹점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.

일반(법인)택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교통정산사업자 등의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인 바, 실제 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은 각 사의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('24.9.30일 또는 '25.2.14일)* 될 예정입니다.

* 선제적인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일반(법인)택시사업자를 우선 영세·중소 가맹점으로 선정하고, 수수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 적용

우대수수료율 적용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**차액**(기납부 수수료 - 우대수수료)은 **소급 적용**하여 **순차적**으로 **환급**할 예정입니다.

* 1차 환급('24.9.27이내): '24.5.21~'24.8.13까지의 매출액
2차 환급('25.3.31이내): '24.8.14~'25.2.13까지의 매출액

【 신용·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】

	적용 수수료율		대상수 (만개)			
연간 매출액	신용카드	체크카드	가맹점	PG하위	택시	
3억원 이하	0.5%	0.25%	230.2	139.4	16.5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.1%	0.85%	28.2	15.0	0.009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.25%	1.0%	27.4	14.6	0.024	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1.5%	1.25%	18.8	9.6	0.068	

<참고1>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 <참고2> 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	신장수	(02-2100-2990)
<총괄>	중소금융과	담당자	사무관	권나림	(02-2100-2991)
<공동>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은순	(02-3145-7550)
	여신금융감독국	담당자	팀 장	강병재	(02-3145-7447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	김민기	(02-2011-0711)
카드본부	담당자	부 장	김효석	(02-2011-0743)	





참고1

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관련 안내

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】



① 통합조회 시스템 로그인 후 우측 상단 "마이페이지" 접속 → ② 마이페이지에서 "가맹점 수수료율"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



참고2

수수료 환급 관련 안내

【 환급대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안내문 예시 】

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

[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]

구분	신용카드	체크카드	
영세가맹점 (연 매출액 3억원 이하)	0.5%	0.25%	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3~5억원)	1.1%	0.85%	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5~10억원)	1.25%	1.0%	
중소가맹점 (연 매출액 10~30억원)	1.5%	1.25%	

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어 2024년 8월 14일(수)*이내에 신용카드 0.5%, 체크카드 0.25%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*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우대수수료율 적용

또한, 귀 가맹점은 2024년 상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규 가맹점으로, 카드사는 금번에 한해, 2024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(신용:0.5%, 체크:0.25%)을 소급 적용하여 이전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*할 예정입니다.

- 단. 카드매출이 없었거나 현재 수수료율이 안내된 우대수수료율 보다 낮은 경우. 환급액이 없을 수 있음
- ** 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('24,9,27,(금) 이후 확인 가능)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「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」(www.cardsales.or.kr)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【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】



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"수수료 환급액 조회" * (PC·모바일 웹) www.cardsales.or.kr (모바일 앱) 카드매출조회

【 환급 관련 정보 안내 】

구분		확인 가능한 정보		
협회	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	▶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총 건수 및 총 환급액		
카드사	각 사 홈페이지	▶ 일별·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, 수수료율, 환급액		